

지급일수는 실직기간 동안 새로운 직장을 탐색하고 취업을 위한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는데 불충분한 시간이다. 따라서 실업급여 지급 일수를 최저 60일에서 최장 300일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대기기간의 단축이다.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의 판단을 위하여 설정된 것으로 사무자동화 및 전산화의 진전으로 단축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 퇴직금제도가 있으므로 대기기간을 길게 설정하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퇴직금제도와 실업급여는 별개의 제도로 대기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의 판단 유무에 필요한 기간일 뿐이다. 따라서 대기기간은 고용보험 전산화가 완료되는 즉시 1주일 이내로 단축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수급자격의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실직자가 실업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실직의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생활안정은 실직자의 생존권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업급여의 수급을 중단하지 말고 일정기간 정지시킴으로써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실업급여의 남용을 동시에 방지하도록 해야 한다. 즉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이라 하더라도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고 수급요건에 해당하면 소정급여일수의 1/3에 해당하는 일수를 소정급여일수에서 공제한 후 잔여일수에 대한 구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자발적 실업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의 인정범위를 폭넓게 하고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유가 아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도록 하는 등 실업급여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건설업에서의 고용보험 적용의 문제점

유 원 희*

I. 서 론

고용보험은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실업하여

그 소득의 원천을 상실한 경우에 보험제도에 의하여 일정기간 소득의 보상을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산업에 필요

* 대우건설 인력관리부 과장

한 노동력의 유지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만 들어졌다.

최근 산업구조조정, M&A 활성화, 부도기업 급증 등의 요인에 기인한 고용조정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및 근로자 능력개발을 포함한 생계지원 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가 서서히 정착되는 단계인 것 같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 시행 이후 건설업에는 운영상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제조업 위주로 제정된 고용보험을 건설업에 적용시킨다는 데 더욱더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 일단 건설업에서 고용보험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건설업의 특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과는 다른 점이 많이 있는데 특히 각 국가의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건설업도 조금씩 다르다. 한국에서는 건설업을 서비스업으로 분류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하지만 제조업과 건설업은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산업이 타산업과 구분될 수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II. 현황 및 문제점

1. 공급 측면의 특성

① 생산의 주문성 : 건설업은 판매를 목적으로 자기 계획에 따라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타인의 의뢰를 받아 생산활동

을 전개하는 주문생산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 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② 생산활동의 이동성 : 건설업의 생산활동은 건설 대상물이 토지와 고착되는 관계 때문에 동일 장소에서 여러 제품의 생산이 어렵다. 그래서 대개 생산활동이 분산되고 이동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③ 노동집약성 : 건설업은 제품의 표준화·규격화가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의존도가 높은 특성을 갖는다.

2. 수요 측면의 특성

① 수요의 불안정성 : 건설업은 수요자로부터 공사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 공급 자체가 건설수요자인 발주자의 동향에 의존하게 된다.

② 수요의 비정형성 : 건설업은 특정한 수요자로부터 특별한 주문을 받아 생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제품을 반복 생산하거나 제품의 표준화·규격화가 어렵다. 따라서 계획적인 시장 판매를 위한 대량생산 체제의 도입이 불가능하다.

③ 선유통성 : 건설 상품의 유통 경로는 대부분 제품이 생산단계에 들어가기 이전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결정되는 선판매 후생산 형태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비교적 단순한 건설 상품의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러한 건설업의 특성 때문에 고용보험을 적용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다고 본다.

3. 보험료 산정 문제

① 인건비 산정이 어렵다 : 고용보험료는 주로 인건비에 의해 결정되는데 그러한 근간이 되는 인건비가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건설공사의 특성 때문에 그 산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② 미래 예측이 어렵다 : 건설업은 수요자로부터 공사 주문을 받아 구조물, 건축물 등을 완성하여 인도하고 공사대금을 받는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건설 공급 자체가 건설 수요자인 발주처의 동향에 의존하게 된다. 그리고 항상 다양한 정치·경제·사회 정세의 영향을 받기 쉽다. 이러한 건설공사의 미래 상황 불예측으로 인해 고용보험료의 개산이 어렵다는 것이다.

③ 이동이 많다 : 건설근로자는 장시간 일정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지 않고 특정 작업에 일시적으로 고용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혜택을 받기 어렵고 또한 작업장소 수시 변동으로 인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실업급여 보험료 산정이 매우 까다롭다.

4. 일용직 문제

① 실업급여 : 건설공사는 노동집약적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설 현장에서는 일용

직근로자로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태이다.

②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사업 : 건설현장에서의 일용직은 단시일의 고용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의 개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5. 고용보험 운영상의 문제

① 보고·관리의 이원화 : 고용보험료 보고는 근로복지공단이, 성립신고 등 관리업무는 관할 노동사무소에서 관찰을 하고 있으므로 업무체계가 이원화되어 있다.

② 홍보의 미흡

③ 대기업에 대한 혜택의 미흡

6. 건설공사에서의 적용의 문제

① 공동 수급 현장에서의 적용의 문제점 : 최근 대형건설공사의 대부분은 공동 수급으로 여러 업체가 참여하여 단독법인 형태로 현장이 운영되고 있으나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참여사간 고용보험료 분담 문제, 자격관리 문제 등 많은 분쟁의 여지를 안고 있다.

② 발주처에서의 고용보험료 미산정의 문제점

7. 타보험과의 관계

① 업무기종 : 현재 우리나라에서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각 운영하는 기관이 상이하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러한 각각의 기관을 상대함으로써 업무의 기중을 초래하고 있다.

② 단일화의 문제 : 위에서 언급하였던 바와 같이 중복 업무 및 창구를 단일화함으로써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 는 것이다.

III. 결 론

결론적으로 고용보험제도를 산업의 특이성이 많은 건설업에 보다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 보완 개선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함으로써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산재보험과 거의 같은 맥락으로 고용보험이 운영되는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고용보험료(직업능력, 고용안정) 보고·납부는 산재보험에서 통일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사업장의 업무를 경감시킬 수 있다.

둘째,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부분을 국민연금에서 흡수·관리하면 피보험자 자격취득 및 상실신고 등 자격관리가 용이하며 업무 창구의 최소화로 불요불급한 업무를 줄일 수 있다.

고용보험심사관의 관할권 문제

양 재 삼*

본사를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에 둔 (주)○○은행의 대전시 대홍동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명예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자신의 거주지와 가까운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고용보험수급자격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수급자격불인정 통지를 받고, 전주지방노

동사무소를 거쳐 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 광주지방노동청 고용보험심사관이 전주지방노동사무소의 수급불인정처분에 대하여 이를 조사하여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현재의 고용보험심사관 관할권 제도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

* 전주지방노동사무소 고용보험과장